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3.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본 조례 제정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찰대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순찰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제정내용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책임과 우리 구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및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범위와 관리·운영 주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의 구성 및 활동기간, 위·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순찰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안 제7조, 제8조)
-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활동비 지원, 보험가입, 포상, 경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검토의견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및 녹지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 함으로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불편살피미의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와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임무·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활동 인원과 활동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을 체계화하려고 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본 조례는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 활동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7조제3항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3. 31.

보고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